

KAAB 2010 인증기준 특별 개정 공청회



사단
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Member of Canberra Accord



UNESCO-UIA

프로그램

- 사 회** 이정수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사무총장, 충남대학교)
개회사 임창복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원장, 성균관대학교)

1부. KAAB 2010 인증기준 개정(안)

I. KAAB 인증사업 현황

- 인증사업 현황
- 인증제도 운영 개선방안

II. KAAB 2010 인증기준 부분 개정(안)

-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안)

2부. KAAB 인증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인증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 KAAB 인증기준 개정(안)
- 인증제도 발전/개선을 위한 제언 등
- 기타 Q & A

I. KAAB 인증사업 현황

1. 인증사업 현황

- 건축학 전문학위 프로그램 개설 현황
- 인증 프로그램 현황
- 인증실사 예정 프로그램 현황
- 인증후보 자격 취득 현황

건축학 전문학위 프로그램 개설현황

개설년도	5년제 건축전문 프로그램	대학수	건축(전문)대학원
2002	강원대학교(춘천), 경기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계명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선문대학교, 세종대학교, 순천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광주), 전남대학교(여수), 전북대학교** ,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서울), 한양대학교(안산),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서울)	40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2003	경남대학교, 가천대학교, 경일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서울), 창원대학교, 중주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19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2004	경주대학교, 관동대학교, 동서대학교, 강원대학교(삼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	
2005	광주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서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 홍익대학교(조치원)	4	동국대학교* 건축대학원
2006	삼육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	
2007	경희대학교	1	
2008	남서울대학교	1	
2011	동명대학교	1	
합계(77)		73	4

* : 동국대 대학원 : 신설(4+2 년제)

** : 5년제에서 4년제로 전환

KAAB 인증 프로그램 현황

(2012. 01월 현재)

NO.	프로그램 명	개설 년도	인증일자
1	명지대학교	2002	2007.02
2	서울대학교	2002	2007.02
3	서울시립대학교	2002	2007.02
4	홍익대학교(서울)	2002	2007.07
5	강원대학교(춘천)	2002	2008.01
6	부경대학교	2002	2008.01
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02	2008.01
8	영남대학교	2002	2008.01
9	충남대학교	2002	2008.01
10	한양대학교(서울)	2002	2008.01
11	울산대학교	2002	2008.07
12	건국대학교 대학원	1996	2009.01
13	경북대학교	2002	2009.01
14	경기대학교	2002	2009.07
15	동아대학교	2002	2009.07
16	성균관대학교	2003	2009.07
17	연세대학교	2003	2009.07
18	한양대학교(안산)	2002	2009.07
19	호서대학교	2002	2009.07
20	단국대학교	2002	2010.01
21	한밭대학교	2003	2010.01

22	국민대학교	2002	2010.07
23	충주대학교	2003	2010.07
24	이화여자대학교	2003	2011.01
25	아주대학교	2003	2011.01
26	전남대학교(광주)	2002	2011.01
27	세종대학교	2002	2011.01
28	목포대학교	2002	2011.01
29	경상대학교	2002	2011.01
	영남대학교	2002	(2nd인증) 2011.01
30	부산대학교	2002	2011.07
	명지대학교	2002	(2nd인증) 2012.01 예정
	서울대학교	2002	(2nd인증) 2012.01 예정
	서울시립대학교	2002	(2nd인증) 2012.01 예정
31	고려대학교	2002	2012.01 예정
32	제주대학교	2002	2012.01 예정
33	충북대학교	2002	2012.01 예정

※ 76개 프로그램 중 33개 프로그램 인증 부여 (43%)

2012년도 인증실사 예정 프로그램 현황

(2012. 01월 현재)

NO.	프로그램 명	개설년도	인증실사 예정일정	인증신청 구분	인증최종 통보일
1	성균관대학교	2003	2012년 전반기	2번째 인증	2012년 7월
2	한양대학교(안산)	2002		2번째 인증	
3	홍익대학교(서울)	2002		2번째 인증	
4	동서대학교	2004		최초	
5	승실대학교	2003		최초	
6	선문대학교	2002		최초	
7	조선대학교	2002		최초	
8	청주대학교	2002		최초	
9	홍익대학교(조치원)	2005		최초	
10	강원대학교	2002	2012년 후반기	2번째 인증	2013년 1월
11	부경대학교	2002		2번째 인증	
1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02		2번째 인증	
13	충남대학교	2002		2번째 인증	
14	한양대학교(서울)	2002		2번째 인증	
15	한경대학교	2002		최초	

※ 2013년도 1월 _ 총 40개 프로그램 인증 예정. (52.6%)

인증후보자자격 취득 현황

(2012. 01월 현재)

□ 인증신청 예정 프로그램 현황

인증후보자자격 취득일	프로그램 수	인증후보자자격 유효기간
2009년 하반기	2	2012년 전반기
2010년 하반기	2	2013년 전반기
2011년 전반기	1	2013년 하반기
2011년 하반기	2	2014년 전반기
계	7	

※ 인증후보자격을 취득한 프로그램에 한하여 인증신청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3년

□ 인증후보자자격 재신청 예상 프로그램

인증후보자자격 신청	반려 프로그램 수
2010년 하반기	1
2011년 전반기	1
2011년 하반기	1
계	3

2.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

- 인증후보자격 및 인증신청 심사기준
- 편입/전과 학생 등 관리 규정
- 설계 교과목 중복수강 및 선 이수체계
- 복수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

인증후보자자격 및 인증 신청 심사기준

인증후보자자격 및 인증 신청 심사기준 – 최초 인증신청 프로그램에 한함

구분	인증후보자자격신청	인증신청
	반려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	
반려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후보자자격 신청자격의 부적합 - 소속대학 내에서 전문학위를 수여하는 독립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미 운영 -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교과과정이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사관리 미흡으로 학생 개개인이 모든 학생수행평가기준(SPC)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지난 인증후보자자격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를 요하는 항목 중 다수가 지적되고, 지적사항이 후속 인증신청 심사까지 적절한 대응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부가적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대응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신청자격의 부적합 - 인증후보자자격신청 심사 반려항목 - 지난 인증후보자자격 심사에서 주의를 요하는 항목 및 인증신청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를 요하는 항목 중 다수가 지적되고, 지적사항이 후속 인증실사까지 적절한 대응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를 요하는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설립목표 및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과과정 운영 미흡 -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사관리 체계 미흡 (체계적 교과과정 이수) - 편입/전과/전환 등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기준 미흡 - 교과목 교육내용과 학생수행평가기준 (SPC)과의 상관관계 미흡 - 인적자원 미흡 - 정보자원 미흡 - 물리적 자원 미흡 - 각 학기별 학생 개인의 설계 교과목 지도시간 미흡 - 지난 인증후보자자격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 미흡 -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후보자자격 심사의 주의를 요하는 항목 - 프로그램의 설립목표 및 교육목표에 의한 특성화 교육과정 세부계획 미흡 - 지난 인증후보자자격 심사에서 주의를 요하는 항목 및 인증신청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 미흡 -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보다 정확한 심사와 심사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기간 중 부가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편입 /전과 학생 등 관리 규정

편입 /전과 학생 등 관리 규정

구분	현행 규정	비 고
KAAB 인증기준	<p>편입 / 전과 학생 등 관련규정</p> <p>1. 인증기준 “2.3 학위 및 교과과정”</p> <p><input type="checkbox"/> 교과과정 이수체계에 대한 도표 및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사관리체계</p> <p>2. 인증기준 “2.10 학생수행평가기준(SPC)”</p> <p><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은 모든 졸업생(편입/전과 학생 등 포함)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고유의 필수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학생수행평가기준(SPC) 항목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p> <p><input type="checkbox"/> 또한 편입, 전과 등 학생의 전적대학 또는 타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인정학점의 경우 해당 이수 과목/시수 들이 프로그램 내 개설 교과목과 상호인정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유지하고 있는 편입, 전과 등 학생에 대한 학사관리체계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p>	<p>-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사관리 체계 구비</p> <p>- 편입/전과/전환 등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등 관련 규정 구비</p> <p>- 국외 교환학생 등 포함</p>

설계 교과목 중복수강 및 선 이수체계

설계교과목 중복수강 및 선 이수체계 등 운영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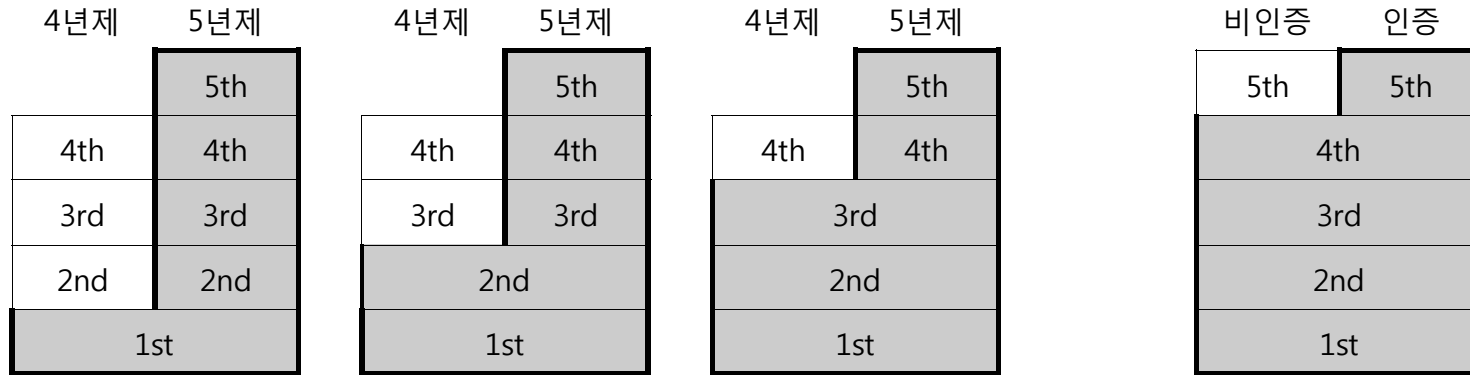
구분	운영 개선 방안	비고
설계 교과목 학사관리 운영 지침	<p>학사관리체계 - 설계교과목 중복수강 및 선 이수체계</p> <p>건축학교육 전문학위 과정에서의 설계 교육은 건축교육의 중심이라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이 통합되어 이루어진다는 특성과 주어진 기간 동안 가르쳐야 하는 지식과 전체적 흐름이 단계별로 확충되어야 하는 특성을 갖는다.</p> <p>따라서 프로그램은 체계적 설계 교육을 위해 설계 교과목을 학년/단계별 수준에 맞게 개설하고 학습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일학기 내 중복수강 금지 및 단계별 또는 선 이수과목 운영 등을 통한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p> <p>다만, 불일치 복학과 기타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동일학기 내 중복수강 또는 단계별 이수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한하여 프로그램은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지만 철저한 개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은 해당 학생의 지도관리 실적과 성과물을 인증실사팀이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인증실사에서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p>	<p>군입대 휴학 및 복학, 한 학기 휴학, 재수강 학생 등</p>
	<p>1학년 설계 관련 교과목 운영</p> <p>일반적으로 2학년부터 전공이 분리되는 학부단위 모집 프로그램에서 기초설계, 제도, 표현기법 등으로 운영되는 1학년 설계관련(설계영역) 교과목의 경우, 인적 자원 및 물리적 자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전공분리 이후 설계 스튜디오 방식으로 운영하는 설계 교과목으로 한정하여 적용</p>	<p>전공분리가 3학년 또는 4학년부터 시작하는 학부단위 모집 프로그램의 경우라 하더라도 2학년 부터 설계 스튜디오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함</p>

복수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분	운영 방안	비고
정보 공개	<p>건축학교육 인증 프로그램 홍보</p> <p>건인원의 인증심사를 거쳐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인증을 취득한 프로그램은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 인증의 취지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 이것은 인증학위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의무이며, 일반 대중을 위한 신입생 모집 및 교육 프로그램 홍보에 항상 일관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의 건인원에 의한 인증학위는 국제적 상호협약 기관들의 인증학위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정 및 교류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공식화 하는 일관된 정보를 모든 건인원 인증 취득 프로그램들이 일반에 공지하고 있어야 한다.</p> <p>이를 위해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 인증의 취지 및 효력에 대한 건인원 작성 문장을 해당 교육기관들이 출판 및 온라인 게시하는 모든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 관련 안내 및 홍보 문건의 서두에 아래의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p>	<p>KAAB 인증규준 집 "4.7 정보공개"</p>
	<p>(교육기관이름)의 (건축학사 또는 건축학석사) 학위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제시하는 인증규준을 준수하고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인증을 취득한 프로그램으로서, 캔버라협약(Canberra Accord) 인증기관들과 유네스코-세계건축가연맹(UNESCO-UIA) 건축학교육인증기구(UVCAE)가 동시에 인정하는 전문학위 프로그램이다. 인증 받은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취득을 등록 건축사의 필수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적 추세이다. (www.kaab.or.kr 참조) 국내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과정은 교육기관의 선택에 의해 5년제 전문학위 학부과정 또는 2년제 이상의 전문학위 석사과정으로 운영되며, 지속적 인증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인증규준을 바탕으로 정기적 인증심사를 수행하며, 결과에 따라 5년 인증, 3년 인증, 조건부 2년 인증, 인증유예 및 거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기관이름)의 (건축학사 또는 건축학석사) 학위의 다음 인증심사는 XXXX년도에 실시될 예정이다.</p>	<p>프로그램 명에 "KAAB 인증" 병기</p> <p>프로그램 홈페이지에 KAAB 로고 부착 및 KAAB 홈페이지 링크</p> <p>건축사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인증 프로그램 명시 추가 예정</p>

복수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집단위 프로그램의 인증 교육과정



학부모집단위 프로그램의 인증 대상 프로그램 사례

불인정 사례

- 복수의 학위과정이 '트랙', '전공' 또는 '프로그램' 등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의해 사전 명시된 내부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 4년제 프로그램으로의 전공분리 시 "공식적" 전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함
- 4년제 프로그램으로 전공 선택한 학생들의 학습성과물은 검증대상이 아님
- 전공분리 이전 공통 교과과정의 경우, 건축학 전문학위 과정으로 운영되어 인증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 4년제 프로그램으로 전공 선택 이후 5년제 프로그램으로 재 진입을 허용하는 경우, 편입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철저한 학사관리를 이행 하여야 함
- 5년제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인증과 비인증 학위과정 운영은 인정하지 않음

II. KAAB 2010 인증규준 부분 개정(안)

건축사법 및 고등교육법

- 건축사법 시행령
- 고등교육법에 의한 평가인증기관 정부인정 지정신청

건축사법 시행령

□ 건축사법 개정내용(2012/05/31 시행예정)

제13조(실무수련) ② ...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1.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부 칙 제2조(실무수련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이법 시행 전에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2012/01/20 입법예고 중)

제15조의2(실무수련자격 취득) ② 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이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정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부칙 제2조(실무수련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 전에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건축대학원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또는 2학기 이상(건축 전공 이외의 학사로서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무수련 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전의 법 제16조에 따라 쌓은 실무경력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5년 이상 : 실무수련 4년
2. 4년 이상~5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3년
3. 3년 이상~4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2년 3월
4. 2년 이상~3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1년 6월
5. 1년 이상~2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9월

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개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1/20중)
<p>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p>제15조의2(실무수련자격 취득)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이하 '건축대학원'이라 한다)에서의 실무수련자격 취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 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에 입학하여 2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 2. 건축 전공 이외의 학사로 건축대학원에 입학하여 4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 <p>② 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정한 교육과정을 말한다.</p>
<p>부 칙 제2조(실무수련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조(실무수련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건축대학원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또는 2학기 이상(건축 전공 이외의 학사로서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무수련 기간은 4년으로 한다.</p> <p>②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전의 법 제16조에 따라 쌓은 실무경력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년 이상 : 실무수련 4년 2. 4년 이상~5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3년 3. 3년 이상~4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2년 3월 4. 2년 이상~3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1년 6월 5. 1년 이상~2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9월

고등교육법 평가인증기관 정부인정 지정신청

□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정부인정 지정신청 현황

서류신청 : 2010년 11월 29일

평가결과 : 2011년 1월 30일(심사 보완요청)

■ 주요 핵심사안

- 1) 건인원의 인재상 설정 -> 핵심역량 설정 -> 인증기준 -> 심사지침
- 2) 성과중심의 평가를 지향할 수 있는 SPC 수정 (자원관련 인증기준 포함)
- 3) 인증기간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마련
- 4) 미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미 인증 프로그램 인증 계획)
- 5) KAAB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주요 핵심사안에 대한 개정안 마련 추진일정

- 1) 교과부 자문회의 - 11년 12월까지 6회 진행
- 2) KAAB 세부 개선안 마련
- 3) KAAB 개정안 공청회 개최
- 4) KAAB 개정안 보완
- 5) KAAB 개정 최종안 이사회 승인 및 교과부 제출 - 12년 2월 예정

인증기준 세부 개정(안)

- 인적자원
- 물리적 자원
- 정보자원
- 학생수행평가기준 (SPC)

1. 인적자원

인적자원

	개정 전	개정 안
KAAB 인증기준	<p>2.5 인적자원 및 운용체계 프로그램은 건축학교육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하게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전임교원, 효율적 행정업무를 위한 교직원, 보조 직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행정 관리직, 도서사서 등이 필요하며 건축CAD 실, 모형제작실 등에 상시 근무하는 지원인력을 둘 것을 권장한다.</p> <p>교수들은 자신의 연구 및 학문을 위한 시간과 전문적 개발을 위한 실무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총 수업부담이 정해져야 한다. 실무와 관계된 과목을 담당하는 상당수의 교수들은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충분한 교육자격을 갖춘 건축사들이 가르칠 것을 권장한다.</p> <p>특히 설계 스튜디오의 교수진은 학생에 대해 충분한 개인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생 1인당 1주일에 40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p> <p>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설계 스튜디오의 수강학생 수 ▪ 설계 1학점 당 교육시수 및 시간 ▪ 교수의 수업부담 (학부 및 대학원 수업 포함) ▪ 프로그램 교수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름, 학력 및 주요 경력, 임용일, 직급 및 직위 2. 담당 강좌 및 강의평가 결과 3. 이력 및 최근 업적 (부록에 첨부) ▪ 외부 강사 (설계스튜디오 및 강의, 초청 강연, 초청 크리틱) 현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름, 학력 및 주요 경력 2. 담당 강좌 및 강의평가 결과 ▪ 기술 및 행정 직원, 보조직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름, 임용일, 직급 및 직위 2. 담당 업무 	<p>2.5 인적자원 프로그램은 학생이 건축학교육을 배우고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인적자원을 제공해야 한다.</p> <p>프로그램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 서술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설계 스튜디오의 수강학생 수 ▪ 설계 1학점 당 교육시수 및 시간 ▪ 교수의 수업부담 (학부 및 대학원 수업 포함) ▪ 프로그램 교수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름, 학력 및 주요 경력, 임용일, 직급 및 직위 2. 담당 강좌 및 강의평가 결과 3. 이력 및 최근 업적 (부록에 첨부) ▪ 외부 강사 (설계스튜디오 및 강의, 초청 강연, 초청 크리틱) 현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름, 학력 및 주요 경력 2. 담당 강좌 및 강의평가 결과 ▪ 기술 및 행정 직원, 보조직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름, 임용일, 직급 및 직위 2. 담당 업무

2. 물리적 자원

물리적 자원

	개정 전	개정 후
KAAB 인증기준	<p>2.6 물리적 자원 프로그램은 효율적인 건축학교육을 위해 적절한 물리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면과 위치, 면적, 수량 등 구체적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스튜디오: 소 스튜디오로 분할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을 권장하며, 이용 시간 동안 냉난방이 지원되는 구조 ▪ 학생 개인자리 및 락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학생 개인자리 및 개인 락커 ▪ <u>도서관 혹은 도서실: 학과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도서관 내에 설치된 경우도 가능</u> ▪ 프로젝트 평가 및 전시실가 가능한 공간: 학생 설계작품 발표, 평가, 전시 등의 기능 수행 ▪ <u>강의실: 대, 중, 소형의 강의실 필요. 대형 강의실은 A/V장비 및 디지털시설을 구비 하여 워크숍, 세미나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 구조여야 함</u> ▪ 교수 연구실 ▪ 컴퓨터 및 출력시설: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적정한 컴퓨터 및 출력장비 및 컴퓨터 수량과 소프트웨어 구비 ▪ <u>모형제작실</u> : 다양한 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 공구 및 기계 장비 확보, ▪ <u>모형촬영실</u> : 촬영용 조명시설과 배경용 스크린 혹은 커튼설비 구비 ▪ <u>시청각 자료실 및 창고: 학생들이 제출한 작품과 과제물 보관 및 각종 재료와 교육용 기자재 보관</u> ▪ 학과사무실 및 학생지원시설 	<p>2.6 물리적 자원 프로그램은 학생의 효율적인 건축학교육을 위해 적절한 물리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p> <p>프로그램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도면과 위치, 면적, 수량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스튜디오 수업과 작업이 가능한 공간 ▪ 프로젝트 평가 및 전시가 가능한 공간 ▪ 컴퓨터 및 출력시설 ▪ 모형제작이 가능한 환경 ▪ 모형촬영이 가능한 공간 및 환경 ▪ 기타 지원시설 현황

3. 정보 자원

정보 자원

	개정 전	개정 후
KAAB 인증기준	<p>2.7 정보 자원</p> <p>정보자원이 학교의 설립목표, 세부계획, 교과과정과 전문적 연구 분야를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 중앙도서관 혹은 독립적 도서관 자료는 인쇄, 시각, 전자 매체 등을 포함하며 그 규모, 범위, 내용, 최신자료, 과거자료, 활용성 등이 건축에 있어서의 전문 학위 프로그램에 적절해야 한다. 균형 잡힌 건축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서적과 기타 지원 서적들과 함께 KDC(분류번호 540, 610) 또는 DDC(분류번호 690, 710, 720)로 분류되고 개별적 도서 분류번호를 가지는 건축전문 서적이 최소 5,000종 이상이 요구되며 적절한 시각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시각 자료와 기타 비서적 자료들은 전체 건축학교육의 일부분으로 고려되며 학생들은 이러한 자료에 직접적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p> <p>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는 다음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가능한 도서관과 유형 ▪ 각 도서관별 장서, 정기 간행물 ▪ 각 도서관별 시각자료, 기타 비 도서자료 ▪ 각 도서관별 전담 사서 유무(시간제 혹은 전일제) ▪ 각 도서관별 자료 검색 수단 ▪ 각 도서관별 지속적으로 도서자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예산 지원 내용 	<p>2.7 정보 자원</p> <p>정보자원이 학교의 설립목표, 세부계획, 교과과정과 전문적 연구 분야를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p> <p>프로그램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 서술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가능한 도서관과 유형 ▪ 각 도서관별 장서, 정기 간행물 ▪ 각 도서관별 시각자료, 기타 비 도서자료 ▪ 각 도서관별 자료 검색 수단 ▪ 각 도서관별 지속적으로 도서자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예산 지원 내용

4. 학생수행평가기준



KAAB 인증제도를 통해 목표하는 인재상 설정

졸업까지 학생이 건축학교육을 통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설정

핵심역량에 따른 세부 인증기준 설정

현행의 SPC는 학습목표이므로 이를 성과중심의 평가가 가능한 기준으로 개정

사례 ; 공학교육인증원 기준 발췌 - 공학인증기준2005(KEC2005)

-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2)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3)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 4) 공학 문제들을 인식하며, 이를 공식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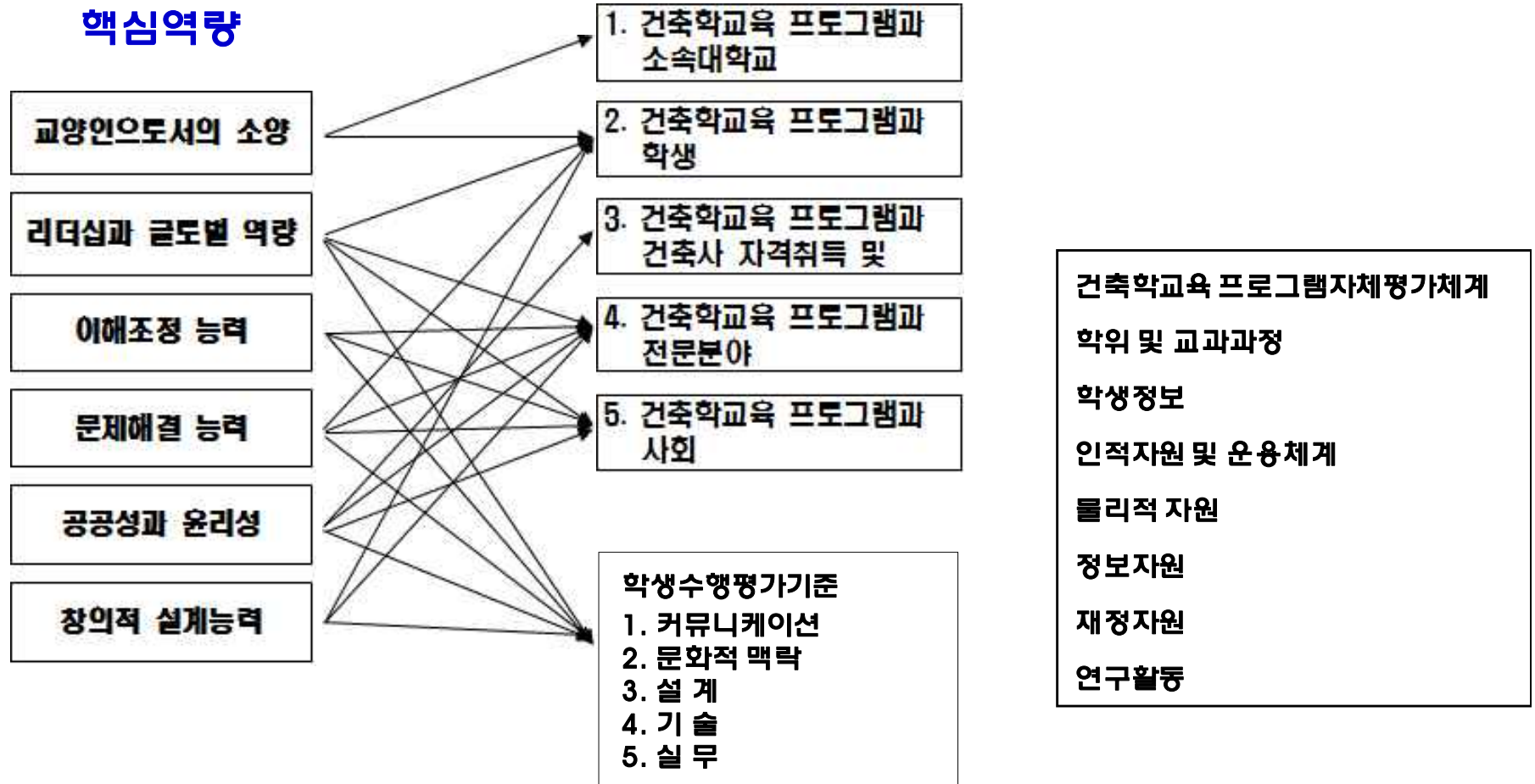
·
·
·

4. 학생수행평가기준

인재상

건축설계의 전문지식과 건설산업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성, 윤리성,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국제수준의 건축전문가 양성

인증기준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방안

- 인증 프로그램 지원방안
 - 집중평가
- 미인증 프로그램 지원방안

인증 프로그램 지원 방안

1. 인증 프로그램 지원방안 - 집중평가

□ 취 지

개정 건축사법에 의해 2012년 5월31일 이후부터 KAAB 인증 프로그램 졸업자는 3년간의 실무수련을 받으면 건축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미 인증 프로그램 졸업자는 4년간의 실무수련을 받는 시행령이 예고 중.

따라서, 개정 건축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KAAB의 인증을 취득한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잔여 인증기간에 대해 재 인증을 부여하여 인증 프로그램 졸업예정자들이 개정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자격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함

□ 대 상 : 33개 인증 프로그램 (2012년 5월31일 이전까지 인증을 취득한 프로그램)

□ 방 법

현행의 집중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인증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집중평가 실시
인증유효 잔여기간에 대해 인증기간 부여
2012년 1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설계 성과물 중심으로 현장실사

□ 시행 계획

집중평가 방문실사 기간 : 2012년 6월 말 ~ 7월 말(약 5주)
인증 최종결정 : 8월 계절학기 졸업 이전

인증 프로그램 지원 방안

□ 시행계획 - 시기 및 일정

집중평가 일정계획	집중평가 프로그램	실사팀 규모	필요 실사팀 위원	실사팀 × 3회	소요내역 산정
2012년 6월 4주차	6 개	6 팀	12 명	2팀/4명	체재비 : 일비 교통비 : 실비정산 수고비 : 25만/인 계 : ± 30만/인 계 : ± 60만/팀
2012년 7월 1주차	9 개	9 팀	18 명	3팀/6명	
2012년 7월 2주차	9 개	9 팀	18 명	3팀/6명	
2012년 7월 3주차	6 개	6 팀	12 명	2팀/4명	
2012년 7월 4주차	3 개	3 팀	6 명	1팀/2명	
계	33 개	33 팀	66 명	11팀/22명	

□ 시행계획 - 예산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비 없음

교육과학기술부 국고지원금 활용

집중평가

□ 집중평가 규정 개정(안)

	현행 규정	개정안
KAAB 인증규 준	<p>4.6.1 집중평가 취지</p> <p>집중평가의 취지는 프로그램의 부족사항에 대한 대응과 개선 정도를 효율적으로 평가하여 정식 인증실사 준비에 따르는 과도한 인적·물리적 비용을 절감하고 부족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여 재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p> <p>3년 또는 조건부 2년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의 경우 연례보고서의 집중평가 신청을 통해 5년 인증으로 연장할 수 있는 절차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은 지적된 부족사항의 개선정도를 자체평가하고 개선정도의 충족도를 검토하여 인증유효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p>	<p>4.6.1 집중평가 취지</p> <p>집중평가는 인증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부여된 인증기간 내 프로그램의 변화 및 부족사항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평가방식으로 정식 인증실사 준비에 따르는 과도한 인적·물리적 비용을 절감하고 재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된다.</p> <p>집중평가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p> <p>(1) 인증기간의 연장 인증심사 결과 3년 또는 조건부 2년 인증 결과를 받은 경우 프로그램은 집중평가 신청을 통해 5년 인증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은 지적된 부족사항의 개선정도를 자체평가하고 검토하여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 내에 집중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2) 학위명 변경 5년 인증 기간을 취득한 인증 프로그램이 부여하는 학위명을 변경하는 경우 (예시: 5년제 인증 프로그램에서 학석사통합 대학원 인증 프로그램 등으로 변경) 프로그램은 집중평가를 통해 잔여 인증기간에 대한 인증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p> <p>(3) 인증 프로그램 추가 개설 기 인증 프로그램 소속대학 내 동등 또는 유사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설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설 프로그램은 집중평가를 통해 기 인증 프로그램의 잔여 인증기간에 해당하는 인증기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프로그램은 기 인증 프로그램 교육내용과 동등 또는 유사함을 증빙하여야 하며 집중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p> <p>(4) 특별 집중평가 건축사법 및 고등교육법 등 관련 제도의 변화가 있을 경우 프로그램은 집중평가 신청을 통해 잔여 인증기간에 대한 인증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p> <p>신청심사 결과로 집중평가가 반려된 프로그램은 인증유효기간 내에 계속 인증을 위한 인증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p>

집중평가

	현행 규정	개정안
<p>KAAB 인증규 준</p>	<p>4.6.2 집중평가 절차</p> <p>집중평가는 신청에서부터 최종결과 통보일 까지 10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p>	<p>4.6.2 집중평가 절차</p> <p>모든 집중평가는 신청에서부터 최종결과 통보일 까지 10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p>
	<p>(1) 집중평가 신청</p> <p>3년 또는 조건부 2년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인증연장을 위한 집중평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건인원은 신청서 및 연례보고서를 통해 부족사항의 개선정도를 심사하고, 승인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에 결과를 통보하며 인증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사업단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평가 항목의 전달과 함께 인증실사를 의뢰하게 된다. 만약 신청 후 심사에 의해 집중평가가 반려된 프로그램은 인증유효기간 내에 계속인증을 위한 인증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p>	<p>(1) 집중평가 신청</p> <p>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부여된 인증기간 내 프로그램의 중대 변화 또는 부족사항의 평가를 통해 인증잔여기간 유지 또는 인증연장을 위한 집중평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건인원은 신청서 및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대변화 내용 또는 부족사항의 개선정도를 심사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프로그램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인증사업단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평가 항목을 전달하여 인증실사를 의뢰한다. 심사에서 신청이 반려된 프로그램은 인증유효기간 내에 계속인증을 위한 인증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p>
	<p>(2) 집중평가 심사팀 구성</p> <p>집중평가를 위한 심사팀은 심사팀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 3명¹⁾과 해당 프로그램의 인증실사에 참여한 심사팀 위원 중 1명을 참관인으로 배정하여 총 4명²⁾으로 구성된다. 인증사업단은 심사팀 위원 중 1명을 심사팀장으로 위촉하고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는 최대 1명의 심사팀 위원에 대해 이해상충의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집중평가 심사팀장과 심사팀 위원의 역할과 임무는 일반 심사팀의 경우와 같다.</p> <p>인증실사 기간은 1일을 기본으로 하고 최대 1박2일을 넘지 못하며, 집중평가 항목 평가를 위한 전시방법 및 규모는 심사팀장과 프로그램의 합의 하에 결정한다. 인증실사를 위한 심사팀 구성방법 및 관련 인증절차는 인증실사 절차와 동일하며 심사팀은 심사팀보고서와 대외비 인증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p>	<p>(2) 집중평가 심사팀 구성</p> <p>집중평가를 위해 인증사업단은 각 유형에 따라 심사팀을 구성한다. 심사팀은 심사팀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로서 교육자 2인과 실무 건축사 1인으로 최대 3명으로 구성되며, 해당 프로그램의 인증실사에 참여한 심사팀 위원 중 1명을 참관인으로 배정할 수 있다. 인증사업단은 심사팀 위원 중 1명을 심사팀장으로 위촉하고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는 최대 1명의 심사팀 위원에 대해 이해상충의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집중평가 심사팀장과 심사팀 위원의 역할과 임무는 일반 심사팀의 경우와 같다.</p> <p>(3) 집중평가 현장실사</p> <p>인증실사 기간은 1일을 기본으로 하고 최대 1박2일을 넘지 못하며, 집중평가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전시방법 및 규모 그리고 실사안건은 심사팀장과 프로그램의 사전합의 하에 결정한다.</p> <p>(4) 인증 결정</p> <p>인증실사팀은 심사팀보고서와 대외비 인증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결정을 위한 후속절차는 정식인증 절차와 동일하다.</p>

미인증 프로그램 지원 방안

1. 미인증 프로그램 지원방안

□ 취 지

- 개정 건축사법 시행령에 의해 2023년까지 5년제 이상 미인증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졸업자도 8학기 이상 이수하면 실무수련자격 부여
-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증후보자격 취득부터 인증실사까지 약 2-3년이 소요되고, 2019년까지는 인증을 취득해야 모든 재학생이 안정적으로 실무수련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인증 프로그램 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함
- 따라서, 미 인증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자문, 간담회 등 제도적 지원을 실시

□ 대 상 : 37개 인증 프로그램 (2013년 1월까지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프로그램 전체)

□ 방 법

프로그램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 전체 및 지역별
자문사업 지원
인증실사 참관 유도

□ 시행 계획

1차 : 2016년 까지 약 30개 프로그램
2차 : 2019년 까지 전체 프로그램 및 신규 프로그램

2부. KAAB 인증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 KAAB 인증기준 개정(안)
- 인증제도 발전/개선을 위한 제언 등
- 기타 Q & A

사단
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감사합니다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Member of Canberra Accord



UNESCO-UIA